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12 발의연월일: 2024. 10. 25.

발 의 자: 박균택・박지원・추미애

김태선 • 이개호 • 이건태

전현희 • 민형배 • 김주영

김현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, 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어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 임(안 제22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1조제1항 전단 중 "출석"을 "출석(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1조(제3자의 출석요구 등) ①	제221조(제3자의 출석요구 등) ①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	
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	
닌 자의 <u>출석</u> 을 요구하여 진술	출석(인터넷 화상장치 이
을 들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의	<u>용을 포함한다)</u>
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	
다.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